

# 11.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행정자치부공고제 1998-118호 1998. 11. 26

## 제 안 이 유

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·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 요 골 자

가.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물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- ①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함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·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다른 물납대상 부동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물납부동산의 변경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.
- ③ 물납대상 부동산의 수납가액 평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(수용·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봄)로 하되, 시가의 평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함.

나.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

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,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,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도록 함.

- 다.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·고급오락장·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함.
- 라.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추가함.
- 마.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.